

III.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

1. 법령상 의무보험가입 대상

□ 운수사업자의 배상책임

-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“화물의 멸실·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”을 부담(상법 준용)

* 관련법률조항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·제24조·제24조의6, 상법 제115조·제135조(붙임 1참조)

□ 화물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해 3가지 사업자로 구분됨

- 화물운수사업자는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, 2가지 사업을 하는 운송가맹사업자*로 구분

*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는 가맹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전산망 등을 이용, 개별운송업자(가맹점)에게 배정하여 운송하는 방식(2004년 9월 1일 (주)모바일와이드 가맹사업신규허가)

□ 법령에서 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사고당 보상한도액 2,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

- 운송사업자는 차량별로 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가 대상이 됨
- 운송주선사업자(이사화물 주선사업자 제외)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운송가맹사업자는 보유화물차량별 및 각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
2. 기존유사상품 가입현황

- 운송사업자의 경우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,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배상책임보험(Cargo Liability Insurance)에 가입하고 있음

<표 4>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계약현황 (FY'94~FY'03)>

년도별	계약건수	보험료(억원)
1994	3,814	44
1996	7,378	61
1998	10,133	146
2000	18,809	129
2001	18,897	119
2002	23,399	136
2003	22,977	155

자료 : 보험개발원, 「손해보험통계연보」

<표 5> 화물배상책임보험 계약 현황 (FY'01~FY'0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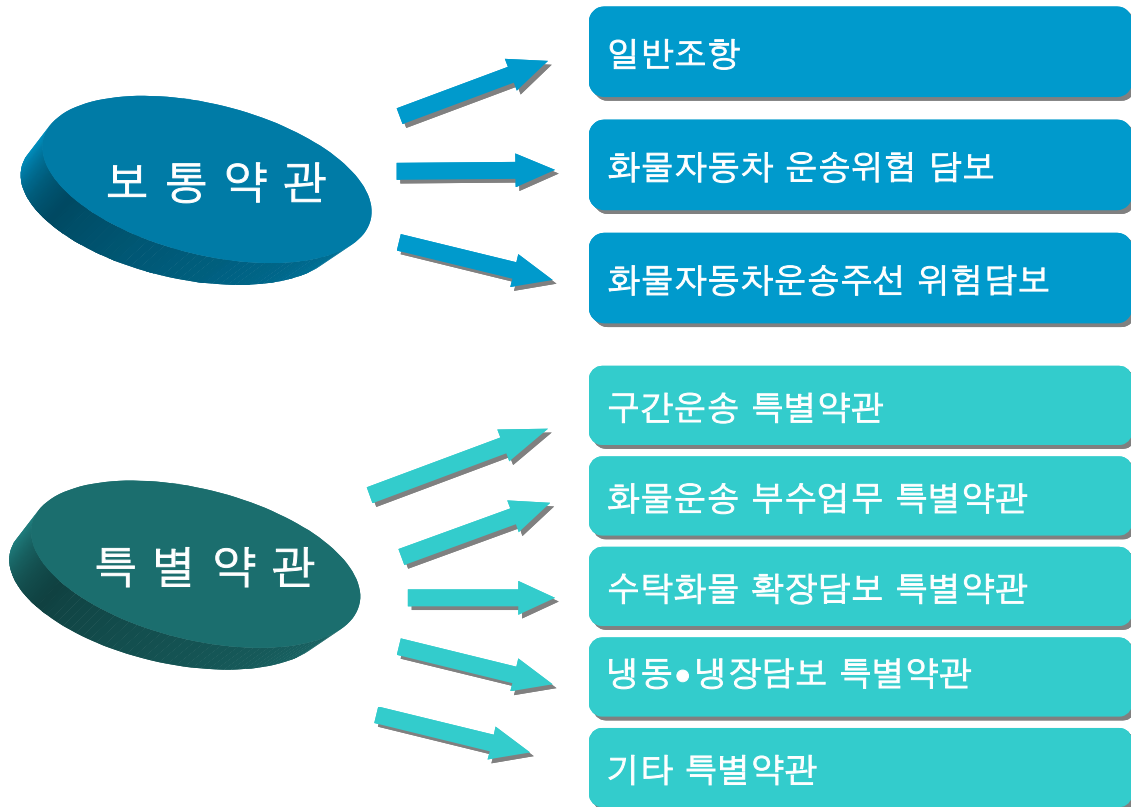
년도별	계약건수	보험료(억원)
2001	120	1.7
2002	150	2.8
2003	230	4.3

자료 : 보험사 제공

3. 보험약관의 구성 및 체계

- 약관구성은 종합보험약관형태
 - 보험소비자의 가입편의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, 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위험을 1개의 약관에 섹션을 구분한 종합보험형태의 약관을 구성함
 - 즉, 화물운수사업의 공통사항을 근간으로 약관의 일반조항을 구성하고, 사업자별 위험을 운송위험, 주선위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면·부채 조항을 규정함

<그림1>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구성



4. 보험조건 및 요율체계

□ 요율의 기본조건

- 법령상 최저가입금액인 사고당 보상한도액 2,000만원부터 2,000만원 초과 10억까지(운송위험담보 기준)금액의 보험료를 다 단계로 구성하여 계약자의 선택폭을 확대
-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은 법정 최저가입 보상한도액 2,000만원의 1%인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

□ 요율산출기초

- 적재물배상책임보험상품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송위험담보는 차량톤수, 주선사업위험담보는 연간매출액을 요율산출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된 보험료를 제시

□ 요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

- 제도시행초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신력제고를 위해서 참조 순보험료를 사용함
 - 다만, 사업비 부분은 각 보험사가 각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적용하게 하여 영업보험료의 차별화를 통한 보험사간 가격 경쟁이 가능토록 함

□ 할인/할증제도의 도입

- 계약자의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율에 따른 할인/할증 제도를 도입
 - 그 조정폭은 70%~250%으로 하여 최대 30% 할인, 최대 150%를 할증하고 평가기간은 역년기준 3년으로 함

□ 기존 유사상품 정비

- 의무보험인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신규로 도입되므로 보험 가입자의 편의도모를 위해
 - 기존의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을 폐지하고,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